#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11

발의연월일: 2025. 1. 7.

발 의 자:황명선 · 윤준병 · 김우영

복기왕 · 정동영 · 김영환

용혜인 · 김문수 · 정진욱

채현일 • 박용갑 • 민병덕

송재봉 • 박희승 • 이용선

염태영 • 박지원 • 박선원

정태호 • 이상식 • 허 영

위성곤 · 황정아 · 신영대

박해철 · 이병진 · 백승아

위성락 • 전용기 • 이재강

문금주・김 윤・오세희

의원(33인)

# 제안이유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고, 경호처장은 차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대통령경호처는 과거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창설되어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각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

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에서 대통령·총리 등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장은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함.

특히, 최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나아가 수사기관 등에서 적법한 수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행 대통령경호처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기도 함.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 소속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담당하게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처의 폐해를 근절하고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종전의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함에 따라, 조직을 설치할 근거를 직접 규정하던 것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 나. 종전의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파견된 사람 등의 경호 인력 과 경호처 조직 등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에 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 다.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하며,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
- 라.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처장 및 경

호처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마.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7조부 터 제14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 삭제).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명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3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직·직무범위와"를 "직무범위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대상자"를 "대상자(이하 "경호대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경호활동을"을 "경호활동을"로 하며, 같은 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경호처가 경호업무를"을 "경호업무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통령경호국) ① 이 법에 따른 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둔다.

②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호처"를 "대통령경호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경호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처장이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고령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처장은"을 "경찰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을 "경호업무를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5조 중 "처장은 직무상"을 "경찰청장은 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로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호처에"를 "대통령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장은 소속공무원의"를 "경찰청장은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장"을 "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처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처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 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
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의 소관 사무는 경찰청장이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대통령경호처"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을, "대통령경호처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 등에	제1조(목적)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경호의 <u>조직·직</u>	<u>직무범위</u>
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와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호"란 경호 <u>대상자</u> 의 생	1대상자(이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u>하 "경호대상"이라 한다)</u>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	
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 및	
방비하는 등의 모든 안전 활	
동을 말한다.	
	<u>.</u>
2. "경호구역"이란 <u>소속공무원</u>	2 <u>경호활동</u>
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u>으</u>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b></b>
<u>경호활동을</u> 할 수 있는 구역	
을 말한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	<u>&lt;삭 제&gt;</u>
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	

을	말한다	

- 4.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 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 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대통령경호처장 등) ① 대 제3조(대통령경호국) ① 이 법에 호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경호처에 차장 1명을 둔다.
  - ③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 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 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처장을 보좌한다.
- 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 5. (생략)
  - 6.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要人)
  - ② (생략)
  - ③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처장이 고령 등의

4.		 	 <u>경호</u>	업무
u u	<u>:</u>	 	 	

통령경호처장(이하 "처장"이라 따른 경호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다)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경|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둔다. ②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 정감으로 보한다.

-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 제4조(경호대상) ① 대통령경호국
  - 1. ~ 5. (현행과 같음)
  - 6.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② (현행과 같음)
  - ----<u>고령 등의 사유</u>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같은 호에 규정된 기간을 넘어 경호 할 수 있다.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처</u> 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 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생략)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 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 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 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 ·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 다.

호 및 안전관리) ① (생 략)

- ②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 은 처장이 된다.
- ③ 경호·안전 대책기구는 소 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공무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	
제5	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u>경</u>
2	<u> 찰청장은</u>
-	
-	
(	② (현행과 같음)
(	③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	
-	
_	
_	
_	
_	
_	
	·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 호 및 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 유)

<u><삭 제></u>

<삭 제>

원으로 구성한다.

④ (생 략)

⑤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장 <삭 제> 은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 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고 장비를 운용 할 수 있다.

제6조(직원) ① 경호처에 특정직 〈삭 제〉 국가공무원인 1급부터 9급까지 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 공무원을 둔다. 다만,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경호공무원 의 정원 중 일부를 일반직 국 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 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② 경호공무원 각 계급의 직무 의 종류별 명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7조(임용권자) ① 5급 이상 경 〈삭 제〉 호공무원과 5급 상당 이상 별 정직 국가공무원은 처장의 제

④ (현행과 같음)

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 만, 전보·휴직·겸임·파견· 직위해제·정직(停職) 및 복직 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행한다. ② 처장은 경호공무원 및 별정 직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외의 모든 임용권을 가진다.

#### ③ 삭제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 정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하 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의6제3항을 준용한다.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 <삭 제> 사유) ① 경호처 직원은 신체 건강하고 사상이 건전하며 품 행이 바른 사람 중에서 임용한 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 용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③ 제2항 각 호(「국가공무원

법」 제33조제5호는 제외한다)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 은 당연히 퇴직한다.

제9조(비밀의 엄수) ① 소속공무 〈삭 제〉 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을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u>서는</u>아니 된다.

②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 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 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 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직권면직) ① 임용권자는 | <삭 제> 직원(별정직 국가공무원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 1. 신체적 · 정신적 이상으로 6 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2.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될 때

- 3. 직제와 정원의 개페(改廢)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 여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 員)이 된 때
-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5.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 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 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 인정될 때
- 6. 해당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 하는 데에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② 제1항제2호·제5호에 해당 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 등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면 직하는 경우에는 임용 형태, 업 무실적, 직무 수행 능력, 징계 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기면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 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 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야 한다.

<u>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u> <u>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u>

1. 연령정년

<u>가. 5급 이상: 58세</u>

<u>나. 6급 이하: 55세</u>

2. 계급정년

가. 2급: 4년

<u>나. 3급: 7년</u>

다. 4급: 12년

라. 5급: 16년

② 경호공무원이 강임(降任)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u><삭 제></u>

계급정년의 경력을 산정할 때 에 강임되기 전의 상위계급으 로 근무한 경력은 강임된 계급 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6급으 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 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 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 다. 다만, 1급 경호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가목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 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 ④ 경호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 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 다.

제12조(징계) ① 직원의 징계에 〈삭 제〉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고등징계위원 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각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이 한다. 다만, 5급 이상 직원의 파면 및 해임은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 ① 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3조(보상) 직원으로서 제4조제 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또는 그와 관련 하여 상이(傷痍)를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삭 제>

률」에 따른 보상을 한다.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① 직원의 신규채용, 시험의 실시, 승진, 근무성적평정, 보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한다.
- ③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 무원법」 제17조 및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u>처장은 직무상</u>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지 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 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 회)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 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 행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책임 을 명확하게 하고, 협조를 원활 <삭 제>

제15:	소(`	ゴフ	<u></u> [기	반	능	케	대	한	엽	소
요 :	청)	<u>경</u>	찰	청징	은	경	호	를	수	행
<u>하</u>	7]	위	하여	1						
제16	조(	대	통령	형경	호	안경	<u> 년</u> 다	H 책	위	원
회)	(1	) .								

하게 하기 위하여 <u>경호처에</u>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생략)
- ③ 위원장은 처장이 되고, 부위 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 된다.

④·⑤ (생 략)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 ① 경호공무원(처장의 제청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경호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을요하는 한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경 호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 를 수행하고, 8급 이하 경호공 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

	 대통	궝	소	<u>숙</u>
<u>으로</u>	 			- —
	 			-

② (현행과 같음)<삭 제>

④·⑤ (현행과 같음) <<u>삭</u> 제> 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 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 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 의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삭 제〉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 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 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 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 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 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에 해당할 때

<삭 제>

-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 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 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 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 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 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 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 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 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흥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이유가 있을 때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손실보상) ① <u>처장은 소속 공무원의</u>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1. • 2.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u>처장</u>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를 둔다.
- ④ <u>처장</u>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 ⑤ <u>처장</u>은 제4항에 따라 보상 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대통 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 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 수할 수 있다.

법률 제20559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0조(손실보상) ① <u>경찰청장은</u>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u>.</u>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경찰</u>
<u>청장</u>
,
④ <u>경찰청장</u>
 ( 구 크 크 크 기기
⑤ <u>경찰청장</u>

⑥ (생략)

제21조(벌칙) ① 제9조제1항, 제1 <삭 제> 8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은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⑥ (현행과 같음)